2022-08-30 16:34:28

창원가포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8. 31.)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공실을 전세형(보증금8 : 임대료2) 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3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경남권역(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을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 적용배제, 단독세대주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본 모집은 **[6. 입주자 선정기준 등(05p)]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2+2년)**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창원가포1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5	1600-1004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주택 유형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창원가포1	국민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5길 37	2개동 310호	'21.11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10. 공통 유의사항-지구 및 단지특성'(13p)]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 유형	공급평형 (㎡)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모집 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창원가포 A-1	국민	24A	24.87 24.99	11.6803 11.7367	12.3479 12.4075	48.8982 49.1342	벽식/개별	118	14	
		24B	24.99	11.7367	12.4075	49.1342		12	6	주거약자용
		46	46.90	21.9424	23.1964	91.8588		180	103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단,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주택 유형	공급 평형 (㎡)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5%)	잔금(95%)				
창원가포 A-1	국민	24	45,584,000	2,279,200	43,304,800	23,740	(-) 42,000,000	3,584,000	111,240
		46	103,720,000	5,186,000	98,534,000	54,020	(-) 97,000,000	6,720,000	256,100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만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전환한도가 다시 산정**됩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4. 모집일정

단지	주택 열람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발표	전자계약 체결
창원 가포 A-1	'22.09.03(토) 10:00~14:00	'22.09.14(수) 10:00 ~ 09.16(금) 17:00 ※ 방문신청 ※ 09.16(금) 접수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09.22(목) 17:00 이후	09.26(월) ~ 09.28(수) 등기우편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부 창원가포 담당자 앞)	12.06(화) 17:00 이후	12.20(화) 10:00 ~ 12.22(목) 17:00 ※ 현장계약 ※ 12.21(수) 매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모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모바일청약은 불가함)**

※ 단, **장애인·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 **신청서류 등을 모두 지참하신 경우** 방문신청(대행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7.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현황 게시) 상기 국민임대주택의 신청현황은 '22.09.14(수) ~ 09.16(금) 매일 18:30에 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기재되며 당일 17:00 까지의 신청분을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분양정보』→ 활성창 오른쪽 상단『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 선택

- **(주택열람)** 주택열람은 지정된 동호에 한하여 가능하며, 직원안내에 따라 열람바랍니다.

 *** 기간: 2022.09.03(토) 10:00 ~ 14:00 (창원가포 A-1 관리사무소)**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인터넷청약』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2003.09.01.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d>무주택</td><td>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세대
구성원</td><td>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tr><th>세대구성원</th><th>비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td></tr>
</table>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란?

본 모집 공고 요건을 충족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1957.08.31.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6. 입주자선정기준 등

아래 선정순서 순위에 따라 입주자(당첨자)를 선정하되, 동 순위 내 경쟁시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장애인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초과	선정 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가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약자가 아닌 세대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가구원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각각 20%p, 10%p를 상향한 금액을 소득기준으로 변경 적용합니다.

 - 예시) 1인가구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변경없음) [2순위] 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120% 이하, [4순위] 소득 120% 초과

 - 대기순번은 선정범위(모집호수의 일정비율) 내에서 순위에 따라 부여되며, 동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순위)는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70% 이하 장애인'(2순위)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을 의미합니다.

■ 소득 기준(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248,479원	2,890,902원	3,854,536원
2인	2,906,622원	3,875,496원	5,328,807원
3인	3,209,283원	4,492,996원	6,418,566원
4인	3,600,405원	5,040,566원	7,200,809원
5인	3,663,036원	5,128,250원	7,326,072원
6인	3,889,913원	5,445,878원	7,779,825원
7인	4,116,789원	5,763,505원	8,233,578원

■ 소득 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거나 신청 정보와 달라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7.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09.14~16	09.22	09.26~28		12.06	12.20~22

▪ **청약 신청하기**

청약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 내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 : 2022.09.14(수) 오전 10시 ~ 09.16(금) 오후 5시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은 09.16(금) 오후 5시까지 접수완료하셔야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번호 부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방문 신청 : 2022.09.16(금) 접수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가능**

- **신청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하니 제반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신청서류] 참조)**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	LH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8.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8.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신청서류를 **서류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2.09.26(월) ~ 09.28(수) ※ 등기우편은 '22.09.28(수) 소인 분까지만 인정**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
- 서류제출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5 임대공급운영부 2층 창원가포 담당자앞**

■ 신청서류 중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서류가 허위·위조·변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① 신청서류

■ 공통 신청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도양식 참고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추가 신청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표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신청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 증빙**이 필요한 경우	1통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 수에서 해당 세대구성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확인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1통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소득 70% 이하자로 장애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1통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신청서류(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1957.08.31.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기본제출 서류로 갈음)
②「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9-30 16:34:28

② 제출방법

■ 등기우편 : 2022.09.26(월) ~ 09.28(수) 소인 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임대공급운영부 2층 (창원가포 국민임대 공급담당자 앞)

9. 당첨자 등 발표 및 계약안내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① 당첨자 등 발표

- **당첨자(당첨여부, 당첨주택 동·호) 및 대기순번(당첨자가 아닌 사람 중 일정비율)은 2022.12.06(화) 17:00 이후 발표되며,**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당첨** 주택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으로 결정되며, 임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최대 1회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 대기순번 비율은 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에게 대기순번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번은 입주자 선정순서(p.5)에 따라 부여되며, 동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등 예비입주자 제도와는 구분되므로 대기순번이 부여되더라도 종전 선정된 장기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예비입주자 지위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② 계약안내

■ 전자계약 : 2022.12.20(화) 오전 10시 ~ 12.22(목) 오후 5시

- **전자계약은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PC 또는 모바일로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세부절차는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22.12.20(화) ~ '23.02.21(화)) 이내에 잔금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는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각각 1회(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 발송하고,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 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이 가능합니다.

■ 방문계약 ※ 방문계약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계약체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장소
창원가포 A-1	'22.12.21(수) (10:00~16:0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22.12.20(화) ~ '23.02.21(화)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이내에 잔금 납부 완료시 입주 가능	LH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계약 일시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계약시 구비서류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10.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청약신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갱신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갱신계약 시 소득수준 변경(소득 100% 초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단지내 시설이용등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일반사항]**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 창원가포 A1BL 국민임대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 또는 창원가포주택건설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 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여건]** • 단지전면으로 사업지구 내를 통과하는 특고압선로 및 송전철탑(천마산~안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이 시설은 존치되므로 우리공사에 이설 등 관련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고압선로 및 송전철탑 존치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해지구 내 단지 전면에는 수변공원 및 오토캠핑장, 단지 후면에는 국도 2호선(마창대교), 가포교차로 등 고가도로로 인한 소음 등의 발생으로 생활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동호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근린생활시설(상가) 전면도로는 공유수면이 일부 점유하고 있어, 해당구간 도로부 축소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공사계획 변경 예정으로 사용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는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로서 주변도로, 기반시설, 단지별 건축공사 및 주택·상가 용지별 개별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는 국유지 및 사유지로서 소유자의 토지사용허가 없이 경작 및 물건의 적재, 방치 할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사항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 및 매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에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창원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의사항은 해당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가포초등학교(기존, 수용인원 제한), 중학교(현재 부지만 확보, 인근 구내 학교 배치), 고등학교(인근 구내 학교 배치) **[단지여건]**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위 경사지붕(철물구조)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 단지이며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101동 옥탑 지붕층에는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일부)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4동, 105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이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의 지상층(1층) 동출입구 주변, 주출입구 경비실(101동 용)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저수조 및 전기실 바닥에는 영구배수시설 설치로 향후 펌프가동 시 공용전기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에는 펌프실 및 저수조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전기실 및 발전기실 인접 동(101, 105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지상돌출물(D/A)을 통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심야 발전기 가동시에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설치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조망권,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산책로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생울타리 또는 금속재 담장이 조성 됩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부대시설 등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 시 외부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각 동별 주출입구 위치가 상이하니 주차시 해당 동에 출입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 및 옥내소화전함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와 이동식 충전기용 콘센트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아파트 내 비상발전기를 활용(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하여 피크전력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전력수요관리 정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단지 내 비상발전기 의무가동(2~3시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및 실내환경]**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되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진행시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단, 주거약자형 세대인 경우 1개소가 설치됨) • 과대한 가전제품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 등 구입 시에는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비상탈출구 경량벽체에는 탈출에 방해되는 물건적치를 엄금함) •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설치형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 시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는 각 세대 발코니 외부에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 벽체 에어컨 배관구는 있으나(복도에 면한 침실 제외) 매립배관은 없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었으며 팜플렛 등에는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기, 통신 단자함은 신발장 내부 후면에 설치되며, 급수 계량기함은 복도 PD에 설치됩니다.
기타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공적이전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8-30 16:34:28

	소득	소득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부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8. 3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215.173 00E0DB0344FC4428AC8ABE69622AE590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